

한국의 고령자주거정책: 현황

박신영(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인주거 현황
3. 노인주거 관련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
 - 3.1 노인의 가족부양 지원제도
 - 3.2 노인전용 주거관련 제도
 - 3.2.1 노인전용 주거관련 법률
 - 3.2.2 노인전용 주거에 대한 정부 지원
 - 3.2.3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 1) 무료 및 실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 2) 유료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4. 노인주거정책의 방향
5. 결론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서구사회나 일본 등에 비해 인구고령화는 아직 초기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¹⁾로의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18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분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2003), 한국은 통계청 2005 발표자료에 근거

정부 역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03년 10월 청와대 정책실 사회통합기획단의 명칭을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04년 2월에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승격·개편하는 등,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적인 고령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²⁾. 특히, '05년 5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³⁾」을 제정하였고, '05년 9월에는 대통령이

1)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인 사회를 고령 사회(the Aged Society)라 부르며, 고령자가 20%인 사회는 초고령사회(the Super Aged Society)가 된다.

2) 대책방향을 보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노인인력뱅크 구축, 취업(고용)지원방안, 창업지원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노인기초보장을 위해서는 경로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킴으로써 1차 안전망을 구성하고, 생활보호를 내실화함으로써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 관리 체계의 구축, 장기요양 시설 및 인력 확보, 공적 장기요양보호 시스템의 구축이 강구되고 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과 취업의 연계 등이 강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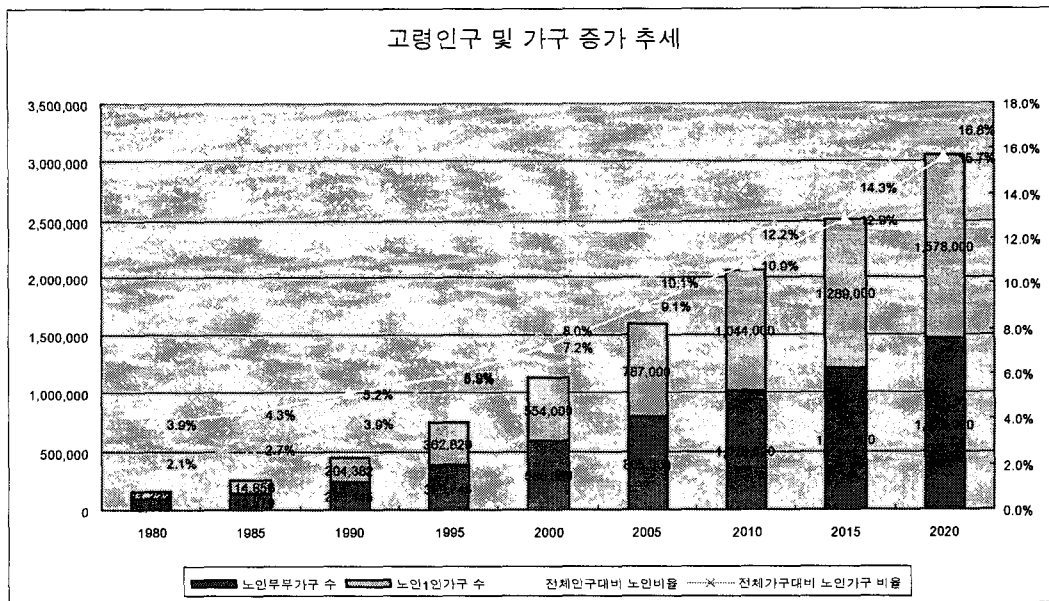
3) 고령사회대책에 관련된 법조항은 고용과 소득보장(법 11조), 건강증진과 의거제공(법 12조), 생활환경과 안전

위원장인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고령사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 현황, 노인주거에 관련된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노인주택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노인주거 현황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따른 인부양 감소 등으로 노인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1980년에서 2020년 사이 인구가구전망에 의하면, 노인 인구증가에 비해 노인 가구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고령인구 및 가구 증가 추세

*자료: 통계청 인구가구전망 2020

이처럼 노인가구가 인구증가를 상회하여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인가

보장(법 13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법 1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법 15조), 취약계층 노인 등(법 16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법 17조), 경제와 산업(법 18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법 19조) 등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언급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구의 자녀동거 비율의 하락 때문이다. 1975년에는 78.2%의 노인이 3세대 동거가족의 형태로 살아왔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20.8%의 노인만이 3세대 동거형태로 살고 있다. 반면에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1975년 7.0%에서 2000년 44.9%로 급증하였다.

<표 3> 노인의 동·별거형태 변화추이 (단위 : %)

	1975 ¹⁾	1981 ²⁾	1990 ³⁾	1995 ⁴⁾	2000 ⁵⁾
3세대 동거가구	78.2	69.1	44.0	39.7	30.8
2세대 동거가구	6.8	11.2	29.4	23.0	23.9
노인 단독 가구	7.0	19.7	23.8	36.6	44.9
기 타	8.0	-	2.8	0.8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1)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75; 2) 김태현, 1981; 3) 4) 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노인의 지역별 거주현황을 보면, 노인가구의 66%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도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하지만 일반가구의 도시거주가구비율 85.9%에 비하면 노인가구의 농촌지역거주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많이 이주했기 때문이다.

<표 4> 노인가구의 거주지 분포

	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가구전체
도 시	66.4	66.5	66.4
농 촌	33.6	33.5	33.6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6.3%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 54.4%에 비해서 높으며, 농촌(面部)으로 갈수록 비율은 더욱 높다. 노인부부에 비해 노인1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66.7%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이 자산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노인의 부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양의 상당부분

4) 노인가구의 분포는 향후 노인의 주거복지정책을 펼칠 때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 따른 노인의 주거복지 관련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을 자녀로부터 받고 있는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소유만으로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표 5> 노인가구의 소유형태

	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가구
자 기 집	66.7	85.4	76.3
전 세 (월 세 없 음)	13.6	8.0	10.7
보 증 부 월 세	7.1	2.9	4.9
보증금 없는 월세	3.3	0.7	2.0
사 글 세	2.6	0.6	1.6
무 상	6.7	2.4	4.5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노인가구의 77.3%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가구의 단독주택 거주율은 50.0%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노인가구의 거주주택 유형

	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가구
단 독 주 택	80.2	74.6	77.3
아 파 트	13.2	17.2	15.3
연 립 주 택	2.5	3.5	3.0
다 세 대 주 택	1.0	1.4	1.2
영 업 용 건 물 내	2.4	3.0	2.7
오 피 스 텔	0.0	0.0	0.0
숙 박 업 소	0.0	0.0	0.0
기 숙 사 등	0.1	0.0	0.0
기 타	0.6	0.3	0.5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노인가구의 거주면적을 보면, 노인가구쪽이 10평 이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의 1인가구 및 2인가구의 비율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10평 이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37.8%, 8.3%인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동 비율은 55.8%, 23.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밀의 문제는 노인가구에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이 단독주택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노인가구의 거주면적>

월 소 득	노인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부부가구	1인가구	2인가구
5평 이하	12.2	1.4	26.5	4.1
6-10평 이하	25.6	6.9	29.3	19.5
11-20평 이하	47.4	47.1	34.2	50.2
21-30평 이하	11.2	34.3	8.0	24.6
31평 이상	3.5	10.3	2.0	5.7
주 거 면 적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원자료

하지만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질적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해 보면 알 수 있다. 건교부가 2004년 최저주거기준으로 발표한 입식부엌의 단독사용, 수세식화장실의 단독사용, 온수시설을 갖춘 목욕시설 단독 사용을 적용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한 결과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일반가구의 미달비율에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8>은 각각의 기준 미달가구를 살펴본 것으로,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화장실이나 심지어는 부엌조차 갖추어지지 않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어,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감안할 때 주거생활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짐작된다.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에는 노인가구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의 77.3%가 단독주택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노인가구의 주거수준

	노인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부부가구	합 계	1인가구	2인가구	합 계
부 었 시설기준 미달	27.4	10.0	18.5	19.2	8.0	12.9
화장실 시설기준 미달	56.2	36.9	46.3	36.8	24.2	29.8
욕 실 시설기준 미달	43.2	22.4	32.5	30.2	16.0	22.3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노인가구의 이러한 주거실태를 감안할 때, 노인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부합되는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3. 노인주거 관련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

현재까지 노인주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정책은 노인과 가족의 동거를 장려하는 정책과 노인전용주거인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된 법제를 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3.1 노인의 가족부양 지원제도

먼저 노인의 가족 부양을 장려하는 제도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 (1)소득세 공제, (2)양도소득세 면제, (3)주택자금우대지원, (4)직계존속 부양자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10% 우선공급이 있다.

(1) 소득세공제는 1988년 소득세법에 신설된 내용으로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51조)가 있다. 경로우대공제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해 부양가족의 연령에 따라 연간 일정금액(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2) 양도소득세면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치이다. 대상은 부모의 나이가 부의 경우 60세(모의 경우는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3)주택자금우대지원이란 2005년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500만원의 할증, 개인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개량자금 용자를 받을 때 1000만원을 더 용자해주는 제도이다.

(4) 직계존속 부양자 국민주택 규모 우선공급제도란 2002년 9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민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신청 자격은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한다. 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신청시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⁵⁾의 50%(05년 기

5) 200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250,830원이다.

준 162.5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50m² 이상인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05년 기준 1인당 227.5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금공제, 주택자금우대지원은 그 혜택의 정도나 유인효과가 미미해서 이용실적이 미비하며, 주택의 10% 우선공급 조차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주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인과 가족의 동거정책은 노인과 자식의 동거를 장려하는 것이지 노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9> 노인가구의 가족 동거를 위한 주택우선분양 현황 ('04년말 기준)

구 분	현 행	'04년 신청실적				
		구분	총공급	배정	계약	배정분에 대한 계약비율
국민주택 우선공급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세대주는 국민주택공급량의 10% 범위 내 우선공급	공공분양	12,003	1,200	42	3.5%
임대주택 우선공급	- 65세 이상 1년 이상 부양 시 임대주택 공급량의 10% 범위 내 우선공급	공공임대	4,329	432	48	11.1%
		국민임대	27,876	2,512	403	16.0%

또한 가족이 노부모를 부양하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3세대 동거형 주택을 개발·공급한 시도가 있었다. 주택설계를 위한 세미나의 개최와 설계도 현상모집 등의 단계를 거쳐 1988년에는 시범적으로 서울 상계동에 전용면적 27.51평, 분양면적 35.72평, 360 가구분의 3세대 동거형 주택이 공급된 적이 있었다. 3대 동거형 주택은 세대간 생활공간의 공동, 분리라는 원칙하에 주호자체의 분리와 각실 간의 세대간 분리로 나누어 크게 同居型, 隣居型, 近居型의 주택유형이 제안되었다. 그 중 세대간에 침실과 화장실, 욕실이 분리되어 있는 同居型과 현관을 2개로 하여 들어가는 입구는 다르지만 주호 내부에 연결통로가 있어 세대간에 독립생활과 공동생활의 융통성이 가능한 隣居型이 시범적으로 건설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96: 15). 그러나 주택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분양문제를 비롯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후 확대·공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3.2 노인전용 주거관련 제도

3.2.1 노인전용 주거관련 법률

노인과 가족의 주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노인만의 주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복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⁶⁾.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전용주거에 관련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복지법」 제 8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무료시설, 실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이나 공급주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던 1981년에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뿐이었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며, 서울시장 또는 해당 도지사의 허가를 얻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지시설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6) 노인복지법(1981.6.5, 법률 3453호)의 주요골자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5월 경노주간을 설정토록 함, ②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 둘 수 있도록 함, ③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복지실시기관)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함, ④ 복지시설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 서비스 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⑥ 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 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함,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89년 12월 「노인복지법」 전문개정시 무료복지시설의 건설만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인식하여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등 노인의 주거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 포함되었다.

<표 10> 노인복지법 주요개정현황과 노인복지시설의 변화

시기	배경	주요골자	노인주거관련 시설규정	비고
'81 제정	-경로효친의 미풍 양속 유지 -노인건강보호시 설 제공	저소득노인에 대한 국가보호 개념 확립	무료·유료양로시설/요양시 설 노인복지센터센터 개념, 설립주체규정	
'89 전문 개정	-노인문제의 심각 성 인식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립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 가수당지급근거 마련	-실비양로시설, 유료요양 시설, 노인복지주택 개념 의 추가	노인복지 주택 개 념 등장
'93 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허 용	재가노인복지사업-가정봉 사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의 법적 근거	
'97.2 개정	민간단체의 사회복 지사업 참여 활성 화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사회복 지모금기금 관리주체로서 공 동모금회 설립		
'97.7 전문 개정	만성퇴행성 노인질 환 대처, 노인의 경제생활 안정	-경로연금 지급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관 리재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무 강화 - 노인의 부양의무자에 대 한 구상권 행사 허용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의료시설, 노인전 문병원 설치	
'99.1 개정	-규제완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자율성 강화 -경로연금제도 미 비점 보완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경로연금대상자 지급대상 자 선정기준 정비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 리 및 공급에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 관련 규정 준 수 -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 시설 입소자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규정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 한 비용 수납 신고제 폐 지	
'04.1	-노인학대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 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 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05.7	-노인 의료보호시 설 설치, 폐지 등 의 권한 위임	-광역시 도시사의 사무를 사회복지시설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시·군·구청장이양		

※97.12.13, 00.1.12, 03.5.29 개정은 타법개정에 의한 개정으로 주거복지시설의 운영 또
는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음.

하지만 1993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시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을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나 비영리법인에 의해서만 설치·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1994년 7~8월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在家目的 노인집합주택 서비스를 규정하는 등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치가 입법화되었다.

그리고 1997년 7월에는 전면개정⁷⁾을 통해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후기고령인구 증가 단독노인세대 증가에 따라 개호서비스를 별개의 시설로 독립, 추가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설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

'99년 1월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개정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03년 5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는 타법에 의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의 개정이 있었으나, 주거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노인복지법 외에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7)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해 全國民年金이 실시되어도 年金適用 대상에서 제외되는 65歲 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國家의 적극적인 所得支援과 老人 就業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등을 통하여 老人保健福祉增進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 노인 의료, 노인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여기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차이는 입주자인 고령자의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상태 여부에 따른 것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 입주하는 시설이다.

<표 11>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유형	개요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양로시설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유료양로시설	급식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의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실비노인복지주택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로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또는 요양
	실비노인요양시설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또는 요양
	유료노인요양시설	급식 또는 요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자기 부담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중병질환노인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중병질환노인을 입소시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자기 부담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노인교실	일상 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제공
	노인휴양소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시설	심신허약 노인과 장애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
	단기보호시설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령

3.2.2 노인전용 주거에 대한 정부 지원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주거전용시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생각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 및 정부지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및 정부지원

유형	입소자격	공적 지원 및 규제
양로시설	·國民基礎生活保障法상의 수급대상노인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국가, 지자체, 복지재단건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 -입소인원1인당 위로금, 주부식비, 피복비,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등 지원 -관리운영비 입소자1인당 2005년686천원 지원 -시설기능보강사업 지원 증개축시 지원
실비양로시설	·본인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生活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복지재단 건설 -종사자 인건비 50% 범위에서 국고 /지방비지원 -입소인원 1인당 무료시설 지원비용의 50% 지급 -입소절차 당사자 계약 -비용징수 한도액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기준 05년 349천원 이하 -입소보증금은 월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 퇴소지 반납의무
실비노인복지주택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生活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사업주체에 대한 규정무 보조금 지원규정 없음.
유료양로시설	·일상生活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개인, 민간건설회사 건설 - 정부지원 없음
유료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生活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상동

자료: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3.2.3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운영되는 무료, 유료 및 실비 양로원, 실비 및 유료 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주거관련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139개로 입소자는 7,067명(정원 9,42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 무료양로시설이 78개이며, 3,835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다. 현재 20여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감안한다면 그 숫자는 턱없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실비시설의 경우는 12개소로 겨우 2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료시설의 경우 8개의 주택을 포함하여 49개소에 1,959명이 입소해 있다.

<표 13> 2004년말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단위 : 개소, 명)

노인인구	노인인구 대비 주거시설 정원 비율(%)	합 계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복지주택			
		시설 수	정원	현원	비율 (%)	시설 수	정원	현원	비율 (%)	시설 수	정원	현원	비율 (%)	시설 수	정원	현원	비율 (%)	시설 수	정원	현원	비율 (%)
4,124,946	0.23	139	9,420	7,067	75.0	78	4,972	3,835	77.1	12	363	230	63.4	41	2,853	1,959	68.7	8	1,232	1,043	84.7

1) 무료 및 실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무료시설에 입주해 있는 3,835명의 노인의 경우 입주자격이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에서 자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무료시설 입소자의 경우 가족 등 연고권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9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할 수 있다.

1986년 경기도 고양군 순애원을 필두로 공급된 실비시설은 무료나 유료시설에 비해 공급호수가 12개로 많지 않으나,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실비시설에 대한 지원이 03년부터 무료시설 지원기준의 50%로 인상되는 등 지원액이 늘고 있으며, 고령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현재까지도 공급사례가 없다. 이는 건설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2001년 10월 전라북도 김제시가 편법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용자된 노인전용아파트를 공급한 예가 있다. 그러나 김제노인아파트는 입주자격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입주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입주자격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공급방법이 적용되었다. 더욱이 김제시의 노인전용 아파트는 김제시가 노인복지법과는 무관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분류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⁸⁾.

이상 무료 및 실비시설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시설생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입소비용과 보증금에 대한 이해부족, 질이 낮은 서비스,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시설입소 기피 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정원대비 입소율이 낮은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률이나 지침을 바꾸어서 입소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저소득노인조차도 무료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가고 싶지 않도록 한 것은 정부의 지원부족과 운영자측의 군림하는 자세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일본에서 특별양호노인 홈, 실비양호노인 홈에 입주하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2) 유료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료시설의 경우 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합하여 49개소로 입소자 현원은 3002명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정원 대비 입소율이 낮은 수준이다. 제일 오래된 유료시설은 제성복지재단이 1988년 7월 1일 설립한 수원시 유당마을이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2001년 4월 삼성생명이 공급한 노블 카운티이다. 유료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임대료, 월이용료를 감안하면 자산이 1억원 이상, 노인 1인인 경우 월평균 소득100

8)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은 '96년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운영방식은 토지를 지자체가 확보하면 필요한 건설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종합복지관, 노인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설에는 국고가 지원되었다. 하지만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김제시는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건설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였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김제시가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영에게 국민주택기금 용자를 알선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부영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는 주택이 아닌 점에서 국민주택기금 용자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후 김제시는 건설되는 건물의 용도를 공공임대아파트로 바꾸었다. 그런데 노인아파트가 건설된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는 교육시설로 되어 있어, 노인복지시설은 건설될 수 있어도 주택은 건설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김제시가 도시계획법(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직원들이 경위서 등을 쓰게 되었다. 분양시는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이는 노인주택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보는 관련부서의 입장 때문으로 노인주택이 보다 저렴하게 건설되도록 하려면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원 이상, 부부인 경우 150만원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료노인복지주택 중 보증금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생명이 운영하는 노블 카운티로 평형에 따라 보증금 2억4300만원에서 7억 8800만원에 월 이용료가 100-230만원 수준에 달한다.

유료시설의 입소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아직까지 유료노인복지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노인층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인구 대비한 일본의 노인주택입소자 비율을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주택 입소자 비율을 예측한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상형종실장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중 1%정도만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주 희망할 것이며, 실제로 입소하는 사람은 그 중 5~10%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尙炯種, 1998: 63~64). 2000년도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제 노인주택 입소자는 1,600~3,37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대부분이 기존의 도시를 크게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도시와 먼 거리에 있는 휴양·전원형의 실버타운보다는 도시형 또는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근교형을 원하기 때문에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의 노인주택이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주택임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주택의 시설이나 설비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별다른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용 주거로서 알려진 4 곳(수원 유당마을, 가야산 실버타운, 강원도 양양의 보리수마을, 부산 흰돌 실버타운)을 방문했으나, 이 시설도 공용부문의 복도와 계단에 손잡이가 있는 정도였으며, 한 곳은 2층이지만 나머지 두 곳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였다. 특히 주택으로 공급된 곳에서도 취사를 할 수 있는 부엌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건강관련시설로는 생활지도원이 있는 정도며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정도였다. 이 밖에 아직도 잔존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노인주택 입소기피, 노인만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공급되어 있는 유료노인주거관련시설의 입소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노인주택정책의 방향

적절한 주거의 확보는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필요성은 고령기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전까지 고령자의 주거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시설로서 고령자 주거 공급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도 개별적인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서 공급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4년부터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에 다소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4년도에는 건설교통부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할 때, 11가지 편의시설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 전까지 욕실 내 미끄럼방지타일, 좌식샤워 시설 설치 등 10가지는 무료로, 좌식싱크대는 원가로 설치토록 한 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가구의 경우에는 욕실에만 한정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어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으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표 14>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국민임대주택)

구 분	시 설 개 요	대 상
욕실	①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가구 및 지체장애 가구
	② 바닥에 미끄럼 방지타일을 시공	
	③ 출입문 규격 확대 : 출입구 폭은 80cm 이상 (단, 구조적으로 가능한 지구 한함)	
	④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밖여닫이)	
	⑤ 좌식 샤워시설 : 욕조 제거 후 샤워공간 확보 및 안전손잡이 (L자형2개, -자형1개) 설치	
주방 가구	⑥ 좌식 씽크대 : 의자 사용이 가능한 씽크대 설치	지체장애 가구
	⑦ 가스밸브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내외)	
거실	⑧ 비디오폰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2m내외)	청각장애 가구
	⑨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유도 시설	⑩ 음성유도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입구에 설치	시각장애 가구
	⑪ 점자 스티커 :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현관 입구의 램프난간·계단난간, 내부경사로 난간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	

대한주택공사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 9월 30일까지 편의시설 신청 실적을 보면 1,652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호수가 172,670호이며, 중복신청이 가능한 점에서 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국민임대주택의 일부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기 쉽게 공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욕실 내 미끄럼 방지 타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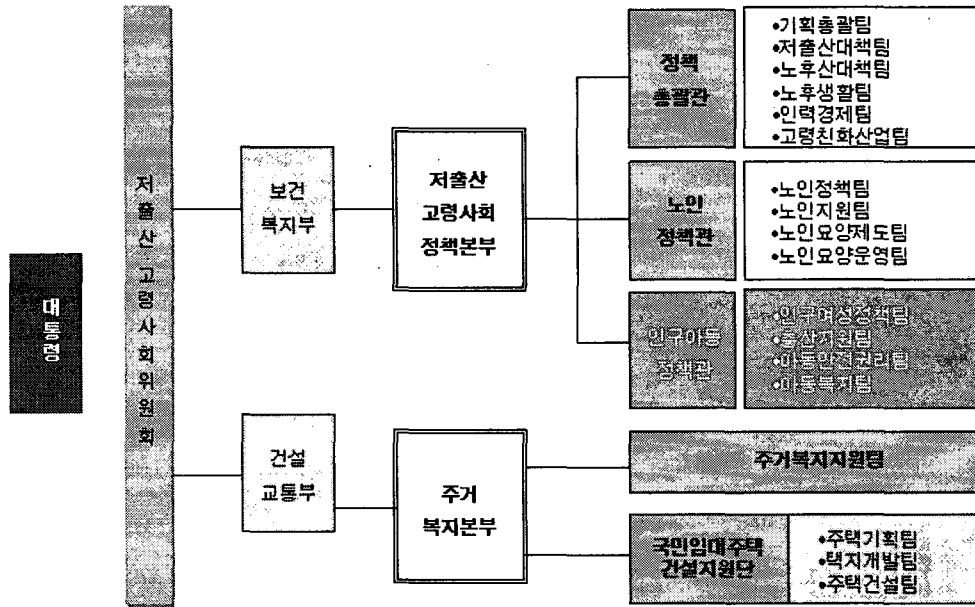
타났다.

<표 15> 국민임대주택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실적

지역	신청건수							
	계	노인, 지체장애인 가구의 욕실				지체장애인 가구의 좌식 싱크대	시각장애인 가구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출입문 확장	좌식 샤워시설		음성유도 신호기	점자 스티커
총계	1652	168	1000	162	256	27	25	14

* 실적 : 0.96%(총 172,670세대 중 1652건 신청)

2005년에 이르러 실비노인복지주택의 대체수단으로 100만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현재 860호의 고령자 전용주택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역은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에 공급되는 경기 가평읍내(330호), 전북 김제하동(90호)과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택지에 건설되는 경기 부천범박(170호), 서울세곡(270호)이며, 신규택지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혼합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 밖에 2005년 9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설치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건교부 주거복지과에서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주택개조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고령자 관련 주거조직

현재 우리나라는 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3월말을 목표로 수립되고 있으며, 주거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전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강구되고 있다.

비 전 : 노인이 편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조성

정책목표 :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노인주거보장 강화
 - 안정적 주거공간 조성
 -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거생활보장
 ○ 고령사회 대비 생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 ○ 노인가구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고령자 주택건설 공급 및 확대
 ○ 생활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구체적인 방안으로 05년도 이미 한국주거학회에 노인가구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주거학회 '04.11~'05.10)이 추진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작년말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05.1~'06.4)를 하도록 함으로써 06년 하반기까지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내에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과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5. 맺는 말

한국사회는 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길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자 주거보장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장기간의 기간을 통해 추진한 정책을 참여정부 출범이후인 2003년 이후 빠른 속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정부의 성격과는 부합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령자의 주거보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따른 부담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며,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의 대상계층이나 지원의 정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7년이 되어야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김영태, 2004. “노인주거정책 방향과 과제” 주택도시, 제82호, 가을호
대한주택공사. 1999. 「노인주택 공급제도 개선 및 주공의 참여방안」
박동석외 지음, 2003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박신영, 최은희. 2003. 「실비노인복지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상형종, “고령화 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도시주거” 「21세기 고령화사회의 지역도시 대응방안」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주최 2003년 제57회 추계학술대회, '03.10.25, 59쪽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編. 2000. 「人口の動向」東京: (財)厚生統計協會.

韓國の高齡者住居政策と現況

朴信 暎 (大韓住宅公社 住宅都市研究院)

目次

1. 序論
2. 老人住居 現況
3. 老人住居關連政策の特性と問題点
 - 3.1 老人の家族の扶養支援制度
 - 3.2 老人専用住居關連制度
 - 3.2.1 老人専用住居關連法律
 - 3.2.2 老人専用住居に對する政府支援
 - 3.2.3 老人専用住居施設の現況と問題点
 - 1) 無料・實費施設の現況と問題点
 - 2) 有料施設の現況と問題点
4. 老人住居政策の方向
5. 結論 결론

1. 問題の提起

韓国は2000年に65才以上の老人人口比率が全人口の7%を越える高齡化社會に侵入したことにより、西歐や日本に比べて人口の高齡化は初期段階にとどまっていたが、出生率の急激な下落による高齡化の速度は世界に類例のない早さで高齡社會に向かっている。

<表 1> 主要國の人口高齡化速度

国家	到達年度			所要期間(年)	
	7%	14%	20%	7~14%	14~20%
韓国	2000	2018	2026	18	8
日本	1970	1994	2006	24	12
フランス	1864	1979	2020	115	41
ドイツ	1932	1972	2012	40	40
イギリス	1929	1976	2021	47	45
イタリア	1927	1988	2007	61	19
アメリカ	1942	2013	2028	71	15
スウェーデン	1887	1972	2012	8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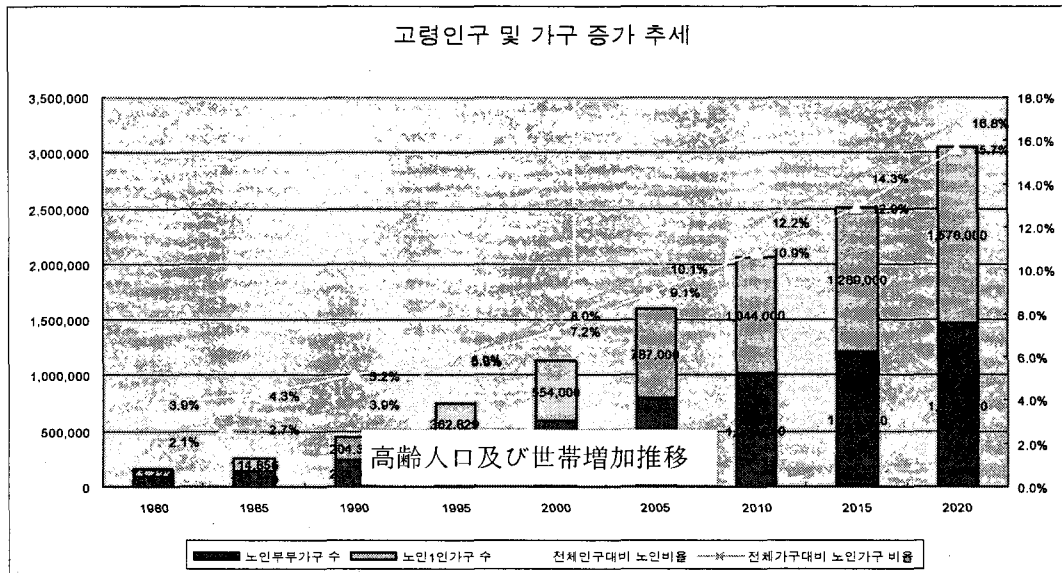
資料: 日本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人口統計資料集'(2003)、韓國統計廳 2005年 發表資料に基づく

政府も急激な高齡化に備えて、03年10月 青瓦臺 政策室 社會統合企劃團の名称を「高齡社會對策および社會統合企畫團」に変更した。また'04年 2月には大統領諮問「高齡化および未來社會委員會」として昇格・改編することなど、老年期にも雇用、ボランティア活動、家族保護などが提供されることによって生産的後を暮せるような高齡化對策を取り備えたことがある。特に、05年 5月には「底出生・高齡社會基本法」を制定し、また 05年9月には 大統領が委員長である「底出生・高齡化委員會」を構成するなど、高齡社會對策を積極的に備えている。

次は、わが國の老人住居の現況、老人住居に關連する制度の特性と問題点を概観し、高齡時代に對應する老人住宅政策の方向を紹介します。

2. 老人住居の現況

わが國は産業化・都市化による核家族化、女性の社會活動擴大による老人扶養減少などで老人世帯の比率が急速に増加している。統計廳による1980年から2020年までの40年間の推移をみると老人人口の増加に比べて老人世帯の増加速度が早いことをわかる。



< 圖1-2> 高齡人口及び世帯増加推移

*資料: 統計庁人口世帯展望 2020

このような老人世帯の増加が人口増加を上回る理由の一つは老人世帯の同居比率の下落である。1975年には78.2%の老人が3世帯同居の家族形態だったが、2000ねんになると 20.8%の老人だけが3世帯を維持している。その代わりに老人1暮らしや夫婦世帯は1975年 7.0%から2000年 44.9%に急増している。

< 표 3> 老人의 同·別居變化推移 (단위 : %)

	1975 ¹⁾	1981 ²⁾	1990 ³⁾	1995 ⁴⁾	2000 ⁵⁾
3世帯同居	78.2	69.1	44.0	39.7	30.8
2世帯同居	6.8	11.2	29.4	23.0	23.9
老人だけ	7.0	19.7	23.8	36.6	44.9
その他	8.0	-	2.8	0.8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1) 韓國ろうじん問題研究所, 1975 ; 2) 金テヒョン, 1981 ; 3) 4) 5) 統計庁人口住宅總調査

老人の地域別居住状況をみると、老人世帯の66%が都市地域に居住していた。またソウル・京畿道の首都圏と廣域市地域に居住している世帯だけでも40%を越えている¹⁾。しかし老人世帯では一般世帯の都市居住比率が85.9%に達することに比べると、老人の農村地域居住率は高いことをわかる。これは都市か・産業化のため農村の若い世代が都市へ移住したためである。

<表 4> 老人世帯の居住地分布

	老人1人世帯	老人夫婦だけ	老人世帯全体
都 市	66.4	66.5	66.4
農 村	33.6	33.5	33.6
合 計	100.0	100.0	100.0

資料：統計庁，2000 人口住宅総調査 2% 標本元資料

老人世帯の自家占有率は76.3%であり、一般世帯の54.4%に比べて高い。その比率の差は都市より農村に行くほどもっと大きくなる。老人夫婦に比べ老人一人世帯の自家占有率は66.7%の低い。しかし、老人が住宅を所有していたとしても住宅が資産として役割をしているのかには疑問の余地がある。老人の扶養で現れているように、子女世帯から経済的扶養をもらっている高齢者が多いので、住宅を所有していることだけで老人世帯の経済的特性を断言するには無理がある。

<表 5> 老人世帯の住宅所有形態

	老人一人	老人夫婦	老人世帯全体
自 家	66.7	85.4	76.3
傳 賃 (月払なし)	13.6	8.0	10.7
保証金 付き月払い賃貸	7.1	2.9	4.9
保証金なし月払い賃貸	3.3	0.7	2.0
年賃貸 (削り賃貸)	2.6	0.6	1.6
無 料	6.7	2.4	4.5
合 計	100.0	100.0	100.0

資料：統計庁，2000 人口住宅総調査 2% 標本元資料

老人世帯の77.3%が特立住宅に居住しているのは、一般世帯の50.0%に比べて

1) 老人世帯の分布は今後の老人住居福祉政策策定の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要素であり、地域的な老人の住居に関する福祉需要をも政策に反映しなければならない。

相当に高いものである。

<表 6> 老人世帯の居住する住宅形態

特立住宅	80.2	74.6	77.3
マンション	13.2	17.2	15.3
連立住宅	2.5	3.5	3.0
多世帯住宅	1.0	1.4	1.2
営業用に建物内	2.4	3.0	2.7
オフィステル	0.0	0.0	0.0
宿泊業	0.0	0.0	0.0
寮	0.1	0.0	0.0
その他	0.6	0.3	0.5
合計	100.0	100.0	100.0

資料：統計庁，2000 人口住宅総調査 2% 標本 元資料

老人世帯の居住面積をみると、10坪以下で居住している比率が、一般世帯の一人世帯や2人世帯の比率より低い。つまり老人一人世帯や夫婦だけの世帯が10坪以下で暮している比率がそれぞれ 37.8%、8.3%であるに對し、一般世帯の同比率は55.8%、23.6%を示している。したがって、過密の問題は老人世帯では深刻な問題ではない。これは老人が特立住宅で過ごしている比率が高いことにも関連している。

<表 7> 老人世帯の居住面積

面 積	老人世帯		全世帯	
	1人世帯	夫婦世帯	1人世帯	2人世帯
5坪以下	12.2	1.4	26.5	4.1
6-10坪以下	25.6	6.9	29.3	19.5
11-20坪以下	47.4	47.1	34.2	50.2
21-30坪以下	11.2	34.3	8.0	24.6
31坪以上	3.5	10.3	2.0	5.7
合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統計庁，2000 世帯消費実態調査報告書 原資料

しかし老人世帯が居住している住宅の質的水準は劣悪であると思われる。これは最低住居水準を適用してみると明確に現れる。建設交通部が2004年発表した、立式厨房の單獨使用、洗浄式トイレの單獨使用、温水施設を備えた沐浴施設の單獨使用の基準を適用して老人世帯の住居実体を把握した結果、老人世

帯の最低住居水準未達比率は一般世帯の比率より高く現れたのである。<表 8> はそれぞれの未達世帯を示したものであり、老人世帯の多くがトイレと厨房で未達している。このことは老人の身体的特性を考えると生活上多くの老人が不便を感じるに違いないと思われる。老人世帯の最低住居水準未達の比率が高いことには老人世帯の主な住居形態が特立住宅であること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と思われる。

<表 8> 老人世帯の住居水準

	老人世帯			全世帯		
	一人世帯	夫婦世帯	合計	一人世帯	二人世帯	合計
厨房 施設基準未達	27.4	10.0	18.5	19.2	8.0	12.9
トイレ 施設基準未達	56.2	36.9	46.3	36.8	24.2	29.8
浴室 施設基準未達	43.2	22.4	32.5	30.2	16.0	22.3

資料：統計庁，2000 人口住宅総調査 2% 標本元資料

このような住居実体を考えると、老人が自分の身体的特性に合う住居空間で居住している可能性は稀であると思われる。

3. 老人住居関連政策の特性と問題点

ここまでの老人住居に関する政策は、主に老人と家族の同居を奨励する政策と老人専用住居である老人住居福祉施設に関する法律を制定するほどで留まっている。

3.1 老人の扶養 家族支援制度

まず 老人の家族扶養を奨励する制度では、子女が両親と同居する場合 1) 初等税控除, (2) 譲渡所得税免除, (3) 住宅資金優遇支援, (4) 直系尊属扶養者に対する国民住宅規模以下住宅10%優先供給などがある。

(1) 所得税控除は、1988年所得税法に新設されたもので、敬老優遇共済（所得税法51条）がある。敬老優遇控除は扶養家族の中、65才以上の老人と生活を友にするものに對して家族の年齢によって年間一定金額（65才以上の場合100万圓, 70才以上の場合 150万圓）を控除する制度である。

(2) 譲渡所得税免除(所得税法施行令 第155条 第4項)は父母と子女がそれぞれ住宅を所有して、別居していたものから兩世帯が同居する場合、譲渡所得税が

免除される措置である。対象は父母の年齢が父の場合60歳（母の場合55歳）以上で扶養家族対象であり、先に賣却する住宅に3年以上住んでいたなかで、同居した後貳年以内に住宅を賣買する場合讓渡所得税が免除される。

(3)住宅資金優遇支援は 2005年現在、65歳以上の老人を扶養する世帯主が傳貫補償金を貸出しする場合 500萬圓の割り増し、個人住宅を新築・購入、あるいは改良するときの融資に1000萬圓の割り増し融資制度である。

(4) 直系尊屬扶養者國民住宅規模優遇供給制度というのは 2002年 9月 住宅供給規則を改定して導入された制度で、國家, 地方自治團體, 大韓住宅公社および吳地方公社である事業主体が 85m² 以下の規模で建設して供給する住宅（國民住宅）の10%以内の範囲で優先権を与える制度を意味する。申し込み資格は住宅申請資格を有する無住託世帯主であり、公告日現在65才以上の直系尊屬（配偶者の直系尊屬を含む）を3年以上扶養しているものである。

しかし税金控除、住宅資金優遇支援は利用実績が多くなく、優先供給も老人同居の世帯主が少なく利用実績が低調である。このようなことから老人と家族の同居政策は老人と子女の同居を奨励するものとはあるが、老人に適切な住居を提供す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

<丑 9> 老人世帯の家族同居のための住宅優先分讓現況（'04年末基準）

區分	現行	'04年 申請實積				
		區分	總供給	配定	契約	配定分 對 契約比率
國民住宅 優先供給	- 65歳 以上 直系尊屬 3年 以上 扶養世帯主に 國民住宅供給量の 10% 範圍 内 優先供給	公共 分讓	12,003	1,200	42	3.5%
賃貸住宅 優先供給	- 65歳 以上 1年 以上 扶養 時 賃貸住宅 供給量の 10% 範圍 内 優先供給	公共 賃貸	4,329	432	48	11.1%
		國民 賃貸	27,876	2,512	403	16.0%

また家族が老父母を扶養することを奨励する方案の一つとして「3世帯同居型」住宅を開発・供給したことがある。住宅設計のためのセミナーや設計コンペなどの段階をへて、1988年に示範的にソウルのサンゲ洞に専用面積 27.51坪、分讓面積 35.72坪、360世帯分の「3世帯同居型住宅」が建設されたことがある。

「3世帯同居型住宅」は世帯間の生活空間の共有・分離という原則下で住戸自体の分離と各室の世帯間分離などで、「同居型」、「隣居型」、「近居型」の3

種類に分けられる。その中、世帯間に寝室とトイレ、浴室が分離されている「同居型」と、玄関を2つにして住戸内部に連結通路を持つ「隣居型」が示範的に建設された(大韓住宅公社,1996:15)。しかし住宅規模があまり狭いことと、分譲問題などの問題があり、その後 拡大・供給されてないままである。

3.2 老人専用 住居關聯 制度

3.2.1 老人専用 住居關聯 法律

老人と家族の住居を前提とするのではなく、老人の住居に限った事項を規定する法律は「老人福祉法」である。「老人福祉法」は、産業化, 都市化, 核家族化の進展によって老人問題が社會問題になることによって、1981年制定された。その目的は、伝統的な家族制度に基づいた敬老孝親の美風良俗を維持・發展させていく一方、老人のための健康維持および施設の提供などの老人福祉政策を効果的に推進することによって、老人の生き生きした生活と社會福祉の増進に寄與することである²⁾。

老人福祉法に規定された老人専用住居に關聯する制度は次のようである。まず「老人福祉法」第8條に「國家あるいは地方自治團體は、老人の居住に適合する機能および設備を備えた住居用施設の供給を助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住居用施設の供給者に対しては適切な支援ができる」と規定されている。そのため、無料施設, 實費施設に対しては政府の補助があるのである。

次に、老人福祉法に規定されている老人福祉施設の類型、または供給主體に關しては時期によって變化があった。老人福祉法が制定された、1981年に老人福祉法に規定された老人福祉施設としては、養老施設, 老人療養施設, 有料養老施設, 老人福祉會館だけであった。老人福祉施設は、國家および地方自治團體によって設立されるし、ソウル市長 あるいは該當の道知事の許可を得る場合、

2) 老人福祉法(1981.6.5, 法律 3453号)の 主要骨子は ① 國家或は地方自治團體が毎年 5月 敬老週間を設定すること, ② 老人の福祉のための相談及び指導業務を擔當するように、市・郡區に老人福祉相談員を設けられる, ③ 保健社會部長官, ソウル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或は市長・郡守(福祉實施機關)は、65歳以上の老人で身體精神環境經濟的理由で自宅での保護が困難な者を老人福祉施設に入所させるか、入所を委託することとする。④ 福祉施設機關は 65歳 以上の老人に対して健康診断及び保健教育を実施できる。⑤ 65歳以上の老人に対して、國家または地方自治團體の運送施設 及び 公共施設と民間 サービス事業の利用料を無料にするか、割引・優待できる。⑥ 老人福祉施設を、養老施設, 老人療養施設, 有料養老施設 及び老人福祉センターなどに区分し、養老施設及び老人療養施設は無料と實費施設に区分する。⑦ 國家或は 地方自治團體は老人福祉施設を設置できるし、社會福祉法人 その他の非營利法人は道知事の許可を得て老人福祉施設を設置できる。⑧ 國家或は地方自治團體は、老人福祉施設に対してその設置または運営に必要な費用を補助できる。

社會福祉法人あるいは非營利機關が老人福祉施設を設立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具體的な施設基準と設置許可に関する事項は保險社會部令になっている。老人福祉施設の設置にかかる費用は、福祉施設機關あるいは「社會福祉事業基金法」による社會福祉事業基金から負擔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1989年 12月 「老人福祉法」 全文改訂時 無料福祉施設の建設만으로 住宅問題を 解決하는데 限界를 認識하여 實費養老施設, 有料老人療養施設, 實費 및 有料老人福祉住宅을 包含하는 등 老人의 住居와 關聯된 새로운 概念이 包含되었다.

<표 10> 老人福祉法 主要改定現況과 老人福祉施設の 變化

時期	背景	主要骨子	老人住居關聯 施設規定	비고
'81 制定	- 敬老孝親の美風 良俗を維持 - 老人健康保護施設 提供	低所得老人に対する國家保護概念 確立	無料・有料養老施設/療養施設 老人福祉センター概念, 設立 主體規定	
'89 全文 改定	- 老人問題の深刻性 認識	- 老人福祉對策委員會 設立 - 65歳以上老人にたいする 國家手 當支給根據 用意	- 實費養老施設、有料療養施設、老人福祉住宅 概念の追加	老人福祉 住宅 概念 登場
'93 改定	經濟行政規制緩和	- 民間企業體および個人の 有料老人福祉施設 設置 運營 許容	在家老人福祉事業-家庭奉仕 派遣事業, 短期保護事業の 法的 根據	
'97.2 改定	民間團體の社會福祉 事業 參與 活性化	民間團體が主導的に社會福祉募 金基金の管理主體として共同募 金會 設立		
'97.7 全文 改定	一、慢性退行性 老人 疾患に對處するため 一、老人の經濟生活 安定	- 敬老年金 支給 - 癡呆老人に対する研究, 管理、リ ハビリ事業に対する 地自體義務 強化 - 老人の扶養義務者に対する 求償 權 行事 許容	- 老人専門療養施設, 有料老人 専門醫療施設, 老人専門病院 設置	
'99.1 改定	- 規制緩和を通じた 施設運營の自律性 強化 - 敬老年金制度 未備 點 補完	- 老人福祉對策委員會 廢止 - 敬老年金對象者 支給對象者 選 定基準 整備	- 老人福祉住宅の設置・管理 および供給に対する住宅建設 促進法 關聯 規定 遵守 - 養老施設, 實費老人福祉施設 に入所した者に賦課できる 金額の上限線 規定 - 有料老人福祉施設に対する 費用、收納申告制 廢止	
'04.1	- 老人虐待防止	- 國家と地方自治團體は虐待される 老人を保護できるように緊急電 話および老人保護専門機關 設置 - 老人保護専門機關 設置		
05.7	- 老人醫療保護施設 設置, 廢止などの權 限 委任	- 廣域市・道知事の業務を 社會福 祉施設の現況把握が 容易である 市・郡・區廳長に移讓		

※97.12.13, 00.1.12, 03.5.29 改訂は、他法改訂によるもので、住居福祉施設の運営または管理に影響はないものとみて除外した。

しかし、1993年12月「老人福祉法」改定時、有料老人福祉施設などを民間ではない国家や非営利法人だけによって設置・運営できるように規定していたのを緩和し、日本やアメリカなどと同じように民間企業や個人にも有料老人福祉施設を設置・運営できるようになった。特に、1994年7～8月「노인복지법」施行令と施行規則を改定し、在宅目的の老人集合住宅サービスを規定するなど有料老人住居施設の建設に必要な措置が立法化された。

そして1997年7月には全面改正³⁾を通じて、無料および実費老人福祉施設、有料老人福祉施設、老人余暇施設などの3種類に分けられていた老人福祉施設を老人住居福祉施設、老人医療福祉施設、老人余暇福祉施設、在家老人福祉施設の4種類に変えてた。また後期高齢人口の増加や単独老人世帯の増加に応じて、介護サービスを別の施設種として加えることによって、施設だけではなくサービスの重要性も反映された。

'99年1月には、老人住居福祉施設の中に老人福祉住宅の設置・管理および供給に對しては住宅建設促進法の関連規定を遵守するという内容が包含された。'03年5月には、住宅建設促進法が住宅法に改定されることによって、実費老人福祉住宅及び有料老人福祉住宅の設置・管理、供給などに関して、この法に規定されている事項を除いては住宅法の関連規定を従うという、他法による改訂があった。そして2004年、2005年の改定もあったが住居関連施設に對した規定はなかった。

老人福祉法以外に、2005年に制定された「低出産・高齢社会基本法」第13條(生活環境と安全保障)では、国家及び地方自治團體は老後生活に必要な機能と設備を備えた住居と利用施設を用意することと、老人が安全で便利に移動できる環境を造成する等の快適な老後生活環境の造成と、災害や犯罪などの威嚇から老人を保護するために必要な施策を講じることを明示している。

3) 人口の高齢化によって増加している痴呆などの慢性退行性老人疾患により効果的に対処し、老人生活を安定させるために、全国民年金が実施されても対象から除外される65歳以上の老人中、経済的に困難な老人に対する国家の積極的な所得支援と老人就業の活性化を謀り、老人福祉施設利用と運営体系改編するために改訂された。

<表 11> わが國の老人福祉施設の種類

区分	類型	概要
老人住居福祉施設	養老施設	無料或は安い料金で給食等の日常生活に必要な便宜を提供
	實費養老施設	安い料金で給食等の日常生活に必要な便宜を提供
	有料養老施設	給食等の日常生活に必要な便宜を提供し、それに所要される費用を入所者から収納
	實費老人福祉住宅	一定所得以下の老人に安い費用で分譲或は賃貸などの住居を提供し、住居の便宜・生活指導・相談及び安全管理などの便宜を提供
	有料老人福祉住宅	有料で賃貸及び分譲住居を提供し、住居の便宜・生活指導・相談及び安全管理などの便宜を提供
老人醫療福祉施設	老人療養施設	無料或は安い料金で給食と療養
	實費老人療養施設	安い料金で給食と療養
	有料老人療養施設	給食と療養に所要されるすべての費用を自己負担
	老人専門療養施設	痴呆、脳卒中等の重度疾患老人を無料或は安い料金で給食と療養
	有料老人専門療養施設	痴呆、脳卒中等の重度疾患老人を入所させ所要されるすべての費用を自己負担
老人専門病院	主に老人を対象に医療を行う施設	
老人餘暇福祉施設	老人福祉會館	無料或は安い料金で健康増進、教養、娯楽などの提供する施設
	敬老堂	地域老人の自律的な集まりの場所を提供
	老人教室	日常生活に関する学習プログラム提供
	老人休養所	衛生施設、余暇施設、その他の便宜施設を短期間提供
在家老人福祉施設	家庭奉仕員派遣施設	身体的、精神的に障害がある老人のいる家庭に家庭奉仕員を派遣
	デイケア施設	心身虚弱老人と障害老人を昼間入所で各種便宜を提供
	短期保護施設	老人と障害老人を施設に短期間入所させて保護

資料：老人福祉法 施行令

3.2.2 老人専用 住居에 對한 政府 支援

老人福祉施設の中で老人住居専用施設と見なすできるのは、無料養老施設、實費養老施設の他に老人福祉住宅、有料養老施設と老人福祉住宅がある。老人

住居福祉施設の類型別特性及び政府支援の現況を次のようである。

<表 12> 老人住居福祉施設の類型及び政府支援

類型	入所資格	公的支援及び規制
養老施設	・国民基礎生活保障法上の受給対象老人 ・65歳以上のものでその扶養義務者から適切な扶養をもらえない者	- 국가, 지자체, 복지재단 건설 -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 - 입소인원1인당 위로금, 주부식비, 피복비,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등 지원 - 관리운영비 입소자1인당 2005년686천원 지원 - 시설기능보강사업 지원 증개축시 지원
實費養老施設	・本人及びその配偶者、扶養義務者の月所得が都市勤勞者家口の平均所得額以下の者で、日常生活に支障のない65歳以上の者	- 복지재단 건설 - 종사자 인건비 50% 범위에서 국고 / 지방비지원 - 입소인원 1인당 무료시설 지원비용의 50% 지급 - 입소절차 당사자 계약 - 비용징수 한도액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기준 05년 349천원 이하 - 입소보증금은 월입소비용의 1년 분 이내에서 수납, 퇴소지 반납의무
實費老人福祉住宅	・實費保護對象者で単独炊事などの独立した生活に支障のない65歳以上の者	- 사업주체에 대한 규정무 보조금 지원규정 없음.
有料養老施設	・日常生活に支障のない60歳以上の者	- 개인, 민간건설회사 건설 - 정부지원 없음
有料老人福祉住宅	・単独炊事などの独立した生活に支障のない60歳以上の者	상동

資料: 2005年度「老人保健福祉事業案内」

3.2.3 老人専用住居施設の現況と問題點

現在 運営されている無料・有料及び實費養老院、そして實費及び有料福祉住宅を含んだ老人住居關聯福祉施設の現況をみると、2004年12月老人住居福祉施設は139個で、入所者は7,067名(定員 9,420名)にすぎない。その中で無料養老施

設が78個であり、3,835名の老人が入所している。現在20万名のを越える低所得層老人の数を考えると、施設数と入所者がかなり少ないといえる。実費施設の場合12ヶ所で250名が入所している。有料施設の場合8ヶ所の住宅を含めて49ヶ所に1,959名が入所している。

<表 13> 2004年末 現在 老人住居福祉施設現況 (単位：個所, 名)

老人人口*	老人人口 対比 住居施設 定員 比率(%)	合計				無料養老施設				実費養老施設				有料養老施設				有料福祉住宅			
		施設 数	定員	現員	比率 (%)	施設 数	定員	現員	比率 (%)	施設 数	定員	現員	比率 (%)	施設 数	定員	現員	比率 (%)	施設 数	定員	現員	比率 (%)
4,124,946	0.23	139	9,420	7,067	75.0	78	4,972	3,835	77.1	12	363	230	63.4	41	2,853	1,959	68.7	8	1,232	1,043	84.7

1) 無料 및 実費施設の現況과 問題點

現在 無料施設に入住している3,835名の老人の場合、入住資格が生活保護対象者である点から資産或は所得がほとんどない状態であることをわかる。無料施設入所者の場合、家族等の縁故権者がいないケースがほとんどであるが、'97年「老人福祉法」の改訂によって扶養義務者がいても適切な扶養をもらえない場合、近隣の確認書をもって入所できるようになった。1986年から供給し始めた実費施設は無料や有料施設に比べて供給数が12個にすぎなく、少なかったのが最近増加している。これは実費施設に対する支援が03年から無料施設基準50%引き上げしたことと高齢者たちの関心も高まっているかとみられる。

実費老人福祉住宅の場合現在まで供給された例がない。これは建設に対する支援もないし、管理・運営に関する支援規定もないかである。2001年 10月 全羅北道 ギムゼ市が国民住宅基金から融資された老人専用アパートを供給したことがある。しかしそれは 60歳 以上の人であれば入住が可能であったため、入所制限としては、有料老人福祉住宅の供給方法である。またギムゼ市の老人専用アパートは、老人福祉法に基づいてないため保健福祉部の分類による老人住居福祉施設には含まれない。

以上の無料 及び実費施設の問題點を整理すると、まず、施設生活に対する否

定的イメージ、入所費用と保証金に対する理科不足、室の低いサービス、伝統的価値観による施設入所忌避等の理由で今まで定員對比入所率が低い結果を見せている。これは日本で特別養護老人ホームや経費老人ホームに入るために3~4年を待っているのと對照的である。

2) 有料施設の 現況과 問題點

現在、保健福祉部から把握されている有料施設の養老施設と有料老人福祉住宅は49個所で入所者の現員は3002名にすぎなく、いまだに定員對比入住率が低い水準にとどまっている。最初の有料施設は「ゼソン福祉財團」が1988年7月設立した、水原の「ユダン村」であり、一番規模が大きいのは、2001年4月に三星生命が供給した「ノブル・カウンティ」である。有料施設に入所のために、保証金と賃貸料、月利用料を考えると資産が1億圓以上必要であり、老人1人の場合平均所得100万圓以上、夫婦の場合150万圓以上の所得が必要である。

有料施設の入所率が低い理由は、いまだに有料老人福祉住宅に関心をもつ老人がそれほど多く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全體人口に對し老人住宅入所者の比率を予測した研究によると、全老人の1%程度が老人住居福祉施設に入所を希望し、そのなかで5~6%だけが實際入所するとされている。(尙炯種, 1998: 63~64). 2000年度老人人口を基準に計算してみると、實際の老人住宅入所者は1,600~3,370名にすぎないことになる。

また、現在運営されている施設はほとんどが都市から離れた地域に位置しているが、わが國の老人たちは休養・田園型のシルバータウンより、都市型或は年に接近性が容易な都市近郊型を好んでいるため関心が低いといわれている。

また、外國の老人住宅は老人の身體的特性を考慮した施設と設備を備えている住宅であるに對し、わが國の現在までの老人住居施設はそのような老人に對する配慮がないという認識があるためだと言われている。

その他に、伝統的価値観による老人住宅入所忌避、老人だけが集まって住むことに對する拒否間等が複合的に作用して入所率が低いこととみられる。

4. 老人住宅政策の方向

和か國の場合、2003年 以前までは高齢者の住居の重要性に對する認識は不足していた。そのため、高齢者居住施設の供給に對する論議はあったものの、個別

的な対応、つまり個人住宅の供給や高齢者住宅に対する改造などに對する議論はあまりなかったのである。

しかし、2004年に建設交通部が制定した「障害者・老弱者のための便宜施設設置基準」によって、國民賃貸住宅の最初分譲者の中で、65歳以上の老人や障害者がいる家族を對象に契約時に希望すると、11種類の便宜施設を設置して供給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高齢者世帯の場合浴室に限定されているため住居支援政策としては限界を持っている。

<表 14> 障害者・老弱者のための便宜施設 設置基準(國民賃貸住宅)

区分	施設概要	対象
浴室	① 通行に支障のある床の段差をなくす	高齢者家口 および 肢體障害 家口
	② 床に滑り防止タイル	
	③ ドアの幅員を拡大：出入口の幅員は 80cm以上 ④ ドアの開閉方向転換	
	⑤ 座式シャワー施設：浴槽なしにシャワー空間確保及び手すり設置	
厨房 家具	⑥ 座式シンク台：椅子使用の可能なシンク	肢體障害 家口
	⑦ ガスバルブ高さ調整：車いすに座って使用可能な高さ(1.2m内外)	
居室	⑧ ビデオフォンの高さ調整：車いすに座って使用可能な高さ(1.2m内外)	聴覺障害 家口
	⑨ 視覚警報器：世帯内1個所設置	
誘導 施設	⑩ 音聲誘導信號機：商街、管理所、視覚障害者が居住するアパート柱棟入口に設置	視覺障害 家口
	⑪ 點字案内：視覚障害者が居住するアパート柱棟玄関入口の傾斜路欄干・階段欄干、内部傾斜路 欄干에 點字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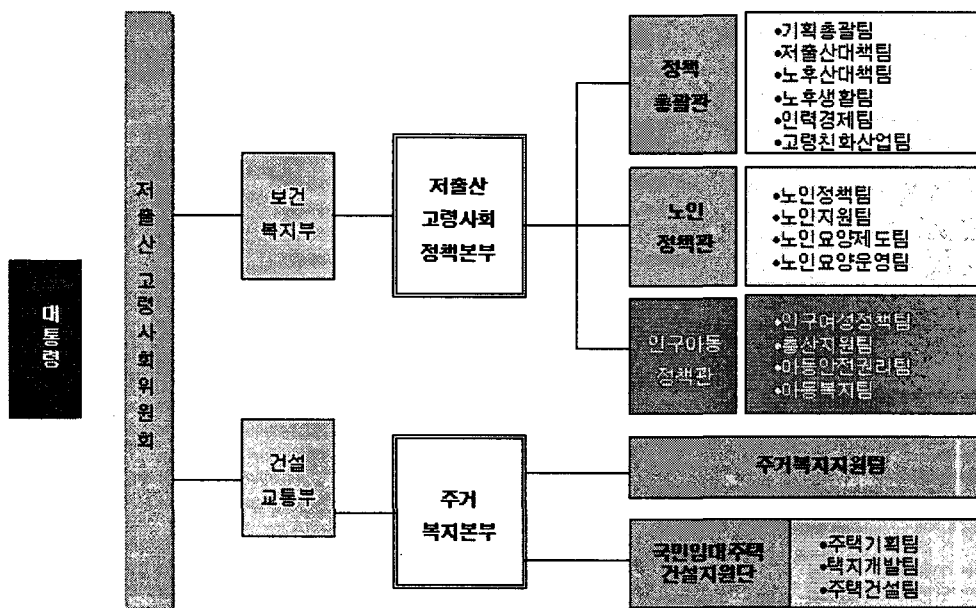
2005年になって、實費老人福祉住宅の代わりに、國民賃貸住宅の一部を高齢者専用國民賃貸住宅として供給する計畫が推進されている。2005年現在860戸の高齢者専用住宅計畫が進行中であり、2008年には入住が可能であると予想されている。具体的に言うと、既存の老人福祉施設がある地域に供給される、京畿 嘉平邑内(330戸)と、全北 ギムゼハドンク(90戸)、そしてたち開發を通じて供給される、京畿 ブチョンバンバク(170戸)、ソウルのセーコク(270戸)である。

その他に、2005年9月には「低出産・高齢社會基本法」の施行によっ、大

統領委員長の「低出産・高齢社会委员会」出凡し、凡政府次元の高齢社会基本計画と年度別施行計画を樹立して推進する機構として「低出産・高齢社会本部」が保険社会部内に設置された。

2005年 12月에는 建交部 住居福祉課から、高齢者が居住する住宅の改造基準が策定された。具體的な支援策は打ち出されては無いものの、住宅改造に政府が關心を持ちはじめとみられる。

現在わが國は05年制定された「低出産高齢社会基本法」によって、低出産・高齢社会基本計画が3月末を目標に樹立されている途中であり、また住居に關しても、次のような多様な政策を高じられつつある。



<圖 2-2> 高齢者住居關連組織

ビジョン

○ 老人が便利で安全に居住できる住居空間造成

政策目標

- 高齢親和的住環境造成及び老人住居保証強化
 - 安定的住居空間造成
 - 最低水準以上の住居生活保障
- 高齢社会に備えた生活環境改善及びインフラ構築

推進戰略

- 老人世帯住宅改造に對する支援体系構築
- 高齢者住宅建設供給擴大
- 生活環境改善及びインフラ構築

具体的方案として、05年度に韓國住居學會に依頼された、「老人世帯の自立生活増進のための住宅改造基準」の研究がなされ(韓國住居學會 '04.11~'05.10)、これを基にした「老人世帯住宅改造基準」を提示したことがある。また、大韓住宅公社の住宅都市研究院に依頼された「高齢者用住宅設計指針」をつくるための研究も進行中である。また今年中に「高齢者住居支援中長期計劃と関連法制定のための研究」も推進される予定である。

5. 終りに

韓國社會は 高齢化という急激な人口構造変化に応じて、高齢者に對する多様な對策とともに、低出産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政策を同時に推進している。高齢者住居保障に關して、外國で長期間にわたって推進した政策を、2003年以後早い速度で準備している。これは住居福祉を重視する政府の視覚と一致しているからであると思われる。しかし高齢者の住居保障に關しては政府主導だけでは成し遂げられない問題が多いと思われるし、財政的負担を考えると、政策の對象階層の決定や支援の程度を決めることには難關が多いと思われる。

<참고문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김영태, 2004. “노인주거정책 방향과 과제” 주택도시, 제82호, 가을호
대한주택공사. 1999. 「노인주택 공급제도 개선 및 주공의 참여방안」
박동석외 지음, 2003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박신영, 최은희. 2003. 「실비노인복지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상형종, “고령화 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도시주거” 「21세기 고령화사회의 지역도시 대응방안」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編. 2000. 「人口の動向」東京: (財) 厚生統計協會.